

# 水産經營學의 本質에 관한 考察

## I. 水産經營學의 研究對象

張 設 鎬

A Study on the Essence of the Fisheries Business Administration

Part I The subject of study

Soo - Ho Chang

### 目 次

|                  |                       |
|------------------|-----------------------|
| I. 序 論           | V. 水産經營學 研究對象으로서의 水産業 |
| II. 水産業의 用語      | VI. 零細水産業과 水産企業       |
| III. 從來의 諸見解     | VII. 結 論              |
| IV. 産業概念으로서의 水産業 |                       |

## I 序 論

水産經營學은 水産業을 研究對象으로 하는 經營學이다. 水産經營學은 第2次世界大戰이후 經營學의 研究가 活發히 進行되는 과정에서 發生된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經營學의 한 分科學으로서 獨立된 領域을 완전히 굳히고 있다고는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그렇다고 이러한 사실이 經營學에서 研究된 方法論이나 定義 또는 概念들이 그대로 水産業의 經營學的研究에 適用될 수 있기 때문이거나 혹은 獨自的 研究의 必要性이나 重要性이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러한 의도나 생각을 갖는다는 것 그 自體가 오히려 特殊部門科學의 研究나 發展을 저해하는 要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극히 조심하여야 할 研究態度라고도 생각된다.

따라서 水産業의 經營學的 接近 곧 經營學의 한 分科學으로서 水産經營學의 研究를 위하여는 첫째, 獨自的인 研究對象이 存在하고 둘째는 그것을 理論的 實證的으로 研究할 수 있는 內容과 重要性이 있고 셋째로는 그에 대한 研究가 하나의 學的體系를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要件이 충족 될 때에 經營學一般論과는 特定範圍外에서 相互異質性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그의 獨自性을 認定받을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水産經營學研究의 本質的인 課題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水産經營學이란 水産業을 經營學的 立場에서 獨自的인 研究對象과 定義 및 概念을 규정할 수 있고 또한 그것을 專門的으로 研究함으로써 經營學 一般에서 除外 또는 소외되었던 部門을 包含하여 하나의 獨立된 經營法則을 도출할 것을 研究하는 것이다. 이것이 經營學一般論의 發展은 물론 水産業의 發展에도 크게 奇與하는 것이다.

이 意味에서 水産經營學의 研究對象으로서의 水産業이 어떤 것이며 또한 그의 經營學的 研究(水

\* 釜山水産大學 水産經營學科 教授

産經營學)가 經營學이나 다른 隣接科學 혹은 關聯科學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獨自性이 있는가를 研究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水産經營學의 本質的 課題에 대한 研究은 지금까지 몇몇 學者들에 의하여 이루어져 왔으나 아직도 미흡하며 이렇다 할 程度의 成果가 거의 없는것 같으므로 여기에 淺學非才를 무릅쓰고 平소의 생각을 試論으로 再整理하여 보기로 한다.

## Ⅱ. 水産業의 用語

우리나라에 있어서 水産業 또는 漁業이란 用語는 日帝의 侵略과 더불어 輸入된 것이며 그 이전에는 漁具 漁法에 의한 구체적인 名稱만이 存在하고 있었을 뿐 오늘날과 같은 包括的인 固有名稱은 存在하지 않았던 것 같다. 文献에 의하여 BC 40年代에 高句麗의 始祖 東明王때에 “梁”이라고 하는 漁法이 있었고 거기에 使用된 材料중에는 鐵綱까지 使用하였다는 記錄이 있다.<sup>1)</sup> 또한 新羅時代에는 第4代 脫解王이 「以漁釣爲業」으로 母親을 供養하였다고 하니<sup>2)</sup> 오늘날의 釣漁業에 해당되는 것이 存在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高麗時代에는 통발(黃滬)<sup>3)</sup> 魚梁<sup>4)</sup>이란 漁具가 使用되고 있었다.

이러한 漁具 漁法이 朝鮮王朝에 들어와서는 더욱 發達한 것으로 사료되나 文献上에서는 魚場(根)<sup>5)</sup> 注泊(注木)<sup>6)</sup> 漁濱(漁筋)<sup>7)</sup> 漁隱(漁篠)<sup>8)</sup> 漁餘(漁基)<sup>9)</sup> 등의 漁具 漁法의 多樣한 名稱과 그리고 漁業에 해당되는 用語로서는 捕魚爲業<sup>10)</sup> 곧 捕魚業으로서 “고기잡이업”이란 用語가 使用되고 있었을 뿐이다.

오늘날 우리가 使用하고 있는 一般名稱으로서의 “漁業”이란 用語는 1886年 11月 12日 調印된 朝鮮國과 日本國 兩國間에 締結된 通漁章程에서 처음으로 나타나고 있다.<sup>11)</sup> 그리고 水産이라고 하는 用語도 1889年 8月 釜山の 日本 居留民들이 設立한 釜山水産會社를 호시로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sup>12)</sup>

그러므로 水産業이란 用語는 漁業이란 用語보다 더욱 뒤늦게 使用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水産이 行政府에 公式的으로 使用된 것은 隆熙 3年(1909年)에 出刊된 農商工部水産局編纂의 韓國水産誌(卷1)에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아 빨라도 1890년 이후 부터 사용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나 그로부터 韓末의 우리나라 文献에서는 漁業이나 水産業에 대한 定義와 概念에 관하여

- 1) 三國史記 卷第20, 高句麗本記, 第8, 62 嬰陽王.
- 2) 三國史記 卷第1, 新羅本記 第14, 脫解王.
- 3) 高麗史 卷第6, 世家 卷第6, 請宗.
- 4) 高麗史 卷第4, 世家 卷第4, 顯宗1.
- 5) 經世遺表 卷第14, 均役事目追議, 海稅 魚稅.
- 6) 萬機要覽 18册.
- 7) 新增東國輿地勝覽 卷之45.
- 8) 萬機要覽 18册.
- 9) 經世遺表 卷之14, 均役事目追議(海稅 魚稅).
- 10) 新增東國輿地勝覽 卷之45, 江原道 高城郡.
- 11) 本章程에서 漁業, 漁業稅라는 用語가 序文 및 各條에서 使用되고 있다.
- 12) 韓國水産誌 第一輯, p. 368 參照.

### 水産經營學의 本質에 관한 考察

언급된 것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獨自의인 研究가 없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日本의 強占이후에도 이땅에서의 水産研究나 水産教育에 종사하던 사람들도 他人(특히 日本人)의 概念規定을 기계적으로 인용하거나 답습하여 왔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水産業의 近代의 教育은 비록 職業的인 中等教育이었으나 1915年 群山農業學校內에 併設된 2年制의 簡易水産學校를 효시로 하며<sup>13)</sup> 그의 高等教育은 1941年 釜山에 高等水産學校(후에 釜山水産專門學校라 改稱 4年制)가 設立되면서 부터이다. 곧 教授와 研究를 겸한 教育研究機關으로서의 釜山高水에서 비로소 水産業의 概念이나 定義 등의 研究와 規定이 있었을 것이 예상된다. 그것은 當該機關에 漁撈學科 增殖學科 水産製造學科의 3學科가 당초부터 設置되어 漁業學講義가 開設되고 있었던 것이며 그후 水産經濟學도 開設되어 있었던 점에서 짐작된다. 그러나 당시 그의 教授陣에는 한 사람의 韓國人도 存在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보아 그에 대한 研究는 日本의 흐름을 계승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韓國人에 의한 水産研究는 釜山高水이전에도 日本國內의 水産高等教育機關에서 教育받고 韓國內의 水産研究機關에 勤務하고 있었던 사람도 있었으나<sup>14)</sup> 그들은 오로지 自然科學的인 調査와 技術開發 研究에 종사하고 있었을 뿐이므로 水産業에 대한 一般的인 概念이나 定義에 대한 研究는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있어서 水産學(水産科學)의 研究는 解放이후 부터이며 그것도 本格的으로는 1960年代에 들어와서 부터 活潑하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 사람에 의한 水産 또는 水産業의 概念이나 定義에 관해서는 1964年 發刊된 梁在穆, 申泌鉉 共編의 水産學總論에서 처음으로 찾아 볼 수 있다. 그에 의하면 梁在穆은 “水産이란 海洋을 基礎的 要件으로 한다”라고 規定하고 있을 뿐이며 水産業에 대한 定義는 그보다 15年後에 發刊된 水産學概論에서 상세히 規定되고 있다. 그에 의하면 “水産業이란 人類生活에 도움이 되고 必要한 水産動植物의 어획 채취 증양식 처리가공에 관한 영리를 목적으로 영위하는 사업이다.”<sup>15)</sup>라고 規定하고 있다.

前揭書의 경우는 水産業이라고 하는 概念이 아니고 水産이라고 하는 產物概念으로서 곧 自然으로서의 海洋(水界)에 根據를 두고 이루어 지는 產物이라는 뜻이나 거기에서는 오히려 技術이라는 뜻으로 理解된다. 따라서 그 技術이란 水界 곧 “물”에 기반을 두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고 한 것 같다. 이에 대하여 後者の 경우는 水産業이라고 하는 完전한 產業概念이며 그것은 人間行爲 곧 人間이 自然에 勞動을 加하여 人間生活에 必要한 財貨나 用役을 形成하는 것을 具體的으로 記述하고 있으며 그것을 內容으로 하는 事業은 營利를 目的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包括的으로 規定하고 있다고 하겠다. 여기에서 注目되는 것은 前者와 後者の 規定이 현실적으로 다같이 必要하며 前者는 後者の 前題가 되는 것이라는 點과 또한 그러한 두 規定이 同一人에 의하여 時間差를 두고 規定되고 있다는 것은 그 間에 있어서 研究의 過程과 發展相을 나타내는 것이라 하겠다. 말하자면 水産業이란 產業은 水産이라는 技術 또는 그의 成立基礎위에서 形成되는 產業(事業)이라는 것을 明白히 하고 있

13) 吉田敬市著, 朝鮮水産開發史, 朝水會, 1954, p. 438.

14) 例로 鄭文基博士는 1929年 日本 東京大水産科卒 朝鮮總督府殖産局水産課 근무, 1939~46年 京畿 木浦 釜山水産試驗場長.

15) 水産學概論, 1980, 太和出版社, p. 3.

다고 하겠다. 이와 같이 볼 때 梁在穆의 水産業에 대한 概念規定은 産業概念으로서의 意義뿐 아니라 技術概念으로서의 意義를 內包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그의 規定은 우리나라 科學史上에서는 實學思想에 根據를 두고 近代科學으로서의 水産科學의 成立과 發展을 도모하는데서 系統化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實學思想은 高麗朝 末期 이래의 性理學의 支配에 반대한 學問으로서 그의 發興은 朝鮮王朝의 宣祖때 부터 光海君사이 라고 하며 그 代表의 人物은 李睟光이다. 그리고 仁祖에서 景宗까지의 四代에 걸치는 期間을 發展期라고 하고 結實期에 있어서 비로소 漁業과의 관계가 나타났다고 한다.<sup>16)</sup> 이러한 實學과 漁業(水産業)과의 關係는 영조~순조時代(1758~1816)에 生存하였던 鄭若鎔의 有名한 效山魚譜와 金鏞의 牛海異魚譜등을 비롯하여 그 후 전집과 단행본 등 36책이나 되는 古典에서 알 수 있다. 梁在穆의 水産業에 관한 概念規定은 바로 이러한 實學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하겠다. 곧 상술한 實學의 近代産業의 集團表現인 水産業을 水産資源의 利用이란 人間行爲나 行動規準을 産業技術의 觀點에서 集約한 것이 梁在穆의 規定이라 하겠다. 그러나 그의 규정과 其他 社會科學의 立場에서의 概念規定도 그 表現에 있어서는 西歐文物을 우리보다 먼저 導入한 日本學者들의 研究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처음으로 社會科學의 立場에서 水産業의 概念規定을 시도한 사람은 表文化敎授이며<sup>17)</sup> 그뒤 金仁台, 朴九秉 등에 의해서 規定된 일이 있으나 후자의 경우도 역시 日本의 嵯川虎三說의 亞流인 岡本清造의 見解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으며,<sup>18)</sup> 그 이후에도 獨自의 見解는 없는 것 같다.

그럼 여기에서 日本學者들을 中心으로 종래의 水産業의 概念을 간단히 考察하여 보자.

### Ⅲ. 從來의 諸見解

현재까지 水産業의 概念에 대한 國內外學者들의 規定을 總合하여 보면 크게 나누어 두 가지 分野로 크게 區分할 수 있다. 그 하나는 自然科學의 分野에서의 見解이며 다른 하나는 人文社會科學의 分野에서의 見解이다. 前者는 주로 水産業의 技術的 側面이라고 할 수 있는 分野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見解로서 그들 個個人의 所論을 여기에 다시 紹介할 필요는 없으나 그들이 가지는 共通性은 “水産業을 人類生活에 利用하는 産業”이라고 하는 觀點에서 그 産業이 가지는 技術現象 또는 自然現象을 파악하는 것을 前提로하여 規定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하여 後者に 있어서는 法學, 社會學, 經濟學, 經營學, 人類文化學등 많은 種類의 分野에 걸쳐 종사하는 사람들의 見解로서 각각 對象領域을 달리하여 規定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諸人文社會科學者들의 共通點은 水産業을 一種의 生産機構로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곧 그것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人間行爲 및 行動을 각각 다른 人文社會科學의 諸分野에서 把握하려고 하고 있을 뿐

16) 柳洪烈監修, 國史百科事典, 東亞文化社刊, 1974, p. 825.

17) 表文化著, 韓國水産經濟學研究序說 I, 韓國水産經濟研究會, 1952.

18) 金仁台·朴九秉 共著, 水産經濟學, 太和出版社, 1963, pp. 36~37.

### 水産經營學의 本質에 관한 考察

이다. 이와 같이 水産業을 “生産機構”로서 파악하려고 한다는 것은 社會的諸事實을 자연적으로 설명하려는 社會科學研究方法論의 一般的인 傾向에 따르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sup>19)</sup>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水産業을 技術科學 또는 自然科學의 立場에서나 社會科學的 立場에서나 다 같이 産業概念으로서 規定하고 있다는 것은 그 研究의 立場을 달리 하고 있으면서도 水産業 그 自體를 一種의 産業으로 간주하고 그 産業의 性格을 각기 當該分野에서 파악하여 理解하려고 하는데 研究의 目的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産業으로서의 水産業에 대하여 技術科學 또는 自然科學의 立場에서의 研究는 水産業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諸現象중 각기 技術 또는 自然現象만을 對象으로 한다. 이와 같이 技術科學 또는 自然科學의 研究에서는 水産業의 技術現象 또는 自然現象을 追求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의 意味論的 概念規定 그 자체에 대해서는 큰 비중이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人間行爲나 活動의 遂行에 관한 技術的 自然的 諸現象에 관심이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그것을 包括하는 概念이란 平凡한 表現만으로 規定하더라도 그들의 研究活動에는 별로 문제나 지장이 생기지 않는다. 그렇다고 技術科學 또는 自然科學者들의 研究活動에서 研究對象이 되는 水産業의 概念에 대한 內容이나 意味論的 追求가 무의미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크게 중요성을 가지는 것이 못된다 하더라도 産業上의 區別에서 技術上 또는 自然科學上의 區別을 할 수 있는 程度에서 그치고 있다는 意味이다.

이에 대하여 人文社會科學의 研究에 있어서는 역시 産業概念으로서의 規定에 입각하고 있으면서도 水産業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人間의 社會活動 곧 多樣하고 變革的인 人間行爲 또는 그 活動과 그에 관한 思推를 對象으로 한다. 그것도 現在와 豫測可能하며 想像可能한 먼 將來의 것 가지를 研究範圍로서 포함하는 意味論에 重點을 두고 있으므로 概念規定 그 자체는 대단히 중요성을 가진다. 따라서 人文社會科學의 研究에 있어서는 그 내부의 각 研究分野나 또는 同一研究分野에 있어서도 개개의 立場이나 觀點의 差異에서 그의 概念規定에 각각 特徵을 나타내려고 하고 있다. 이 점에서 前者와는 다른 概念規定上의 特徵을 가진다고 하겠다.

그러나 그러한 立場과 觀點을 달리하면서도 水産業의 人文社會科學의 研究에 있어서는 人間行爲 또는 그 活動이 經濟行爲나 活動을 基礎로 하고 있는데서 “水産業을 生産機構”로 看做하고 있는 것이다. 곧 “水産業을 生産機構”로 看做하고 거기에서 發生하는 諸社會現象중 特定(分野)의 共通性을 가지는 固有現象만을 研究對象으로 하여 細分化한 각 分野가 形成되고 있으며 따라서 그에 따른 固有의 概念이 規定되고 있다. 이러한 理由에서 水産業에 관한 水産經營學의 研究對象으로서의 概念規定도 成立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나타난 水産經營學的 立場에서의 水産業의 概念規定을 보면 대체로 水産經濟學的 立場에서의 概念規定을 그대로 適用하거나 그의 解釋을 달리하거나 또는 補充的 說明的인 立場을 취하고 있는 것 같다. 예컨대 進술한 八木庸夫와 蜷川虎三의 關係에서도 이러한 점을 찾아볼 수 있다. 곧 八木庸夫는 “水産業이란 水界를 그 生産의 基礎的 要件으로 하는 原始産業”이라고 하는 蜷川說을 分析하여 補充하고 있는데 特徵이 있다.

蜷川에 의하면 水産業을 原始産業으로 규정하고 그것을 農業, 林業, 鑛業과 同列에 두고 工業, 商

19) 自然科學의 발달과 함께 技術, 經濟, 政治 등을 綜合한 社會科學體系가 形成된 이후에는 “生産機構”中心의 研究方法論이 주로 展開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Porsons의 行爲理論등 새로운 方法論들이 展開되고 있다.

業에 대응시키고 있으며 또한 水界를 그의 生産의 基礎的 要件으로 한다는 데서 다른 原始産業과도 區別하여 그 産業上의 關係地位를 찾으려 하고 있다. 이와 같이 그는 水産業의 本質을 단순히 生産 技術的 觀點만에서가 아니라 水界生物이라는 自然物을 商品化하는 社會的 生産이라는 商品生産의 全體系를 내용으로 하는 産業의 觀點에서 規定하고 있다.

이러한 蠅川說에 대하여 同義하는 八木는 “水産業 特有의 不可缺의 部分이 되고 있는 第2次 3次 産業 곧 水産業의 기반이 되는 漁業, 養殖業을 根據로 하여 連續的으로 形成되는 商品生産의 全體系를 水産業의 概念에 包含시켜야 한다고 主張하고 있다.<sup>20)</sup> 곧 그에 의하면 水産業의 成立을 위해서는 一部の 製造業(水産製造業)이 不可缺의 存在라 하여 그것을 水産業에 포함시킨다면 다같이 不可缺한 水産物都賣, 仲買, 小買業등의 水産物取扱業과 漁船 및 機關製造業, 漁具漁網製造業, 漁業機器製造業, 漁業協同組合系統機關, 水産金融機關, 等等 關聯하는 部分에 대해서도 水産業의 獨特한 部分으로서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sup>21)</sup> 이러한 그의 論理는 蠅川說의 補充으로서 水産業의 範圍에 漁業 養殖業을 基盤으로 形成되고, 商品生産의 全體系를 産業으로서 完結의인 形態를 가지는데 필요한 모든 部分을 망라하여야 한다고 主張하고 있다고 하겠다.<sup>22)</sup>

이에 대하여 日本에 있어서 事實상의 水産經營學創始者인 伊豆川淺吉 등은 오히려 종래 日本業界의 通說인 技術概念에 따라 “水産業이란 第1次産業인 漁業을 中心으로 하여 養殖業, 水産製造業을 포함하는 産業이다.”<sup>23)</sup>라고 規定하고 그 下位概念으로서 漁業, 養殖業, 水産製造業에 대한 概念을 個別的으로 規定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經營學에서라기 보다도 經濟學的 立場에서 說明하고 있다.<sup>24)</sup>

이와 같이 日本에 있어서의 水産業에 대한 社會科學的 立場에서의 概念規定은 크게 보면 技術科學 또는 自然科學的 基盤에 의한 通說과 水産經濟學者인 蠅川說을 기저로 한 經濟學的 觀點에서 展開되고 있다고 하겠다.

특히 후자를 따르는 經濟學的 觀點에서의 概念規定에 대한 구체적인 內容들은 대체적으로 보아 水産業을 農業經濟的 메카니즘에서 考察하고 있는 데 特徵이 나타나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水産業의 生産對象物은 自然物로서 또한 生物이며 그것이 人間에 대하여 本源的으로 食糧이란 既成의 生活資料를 提供하는 土地와 마찬가지로 人間의 勞動力 없이는 生産을 發揮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水産物도 人間勞動力의 一般的인 對象으로서 存在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思考는 農業의 地代理論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이다.<sup>25)</sup> 農業地代論에 의하면 農業에 있어서 採取란 勞動에 의하여 大地와의 직접적인 연락으로 부터 강제로 배어 놓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만으로 農業生産이란 一切의 것을 天然에 存在하는 勞動對象이라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水産業에 있어서 생산지반이 되고 있는 水界에서 분리하여 捕獲하는 魚(水産物)와 原始林에서 伐採되는 材木과 鑛山에서

20) 八木庸夫著, 養殖經營論, p. 15

21) 上掲書, p. 14

22) 上掲書.

23) 伊豆川淺吉外共著, 水産經營學, 恒星社厚生閣, p. 17

24) 上掲書, p. 17~18

25) 一般的規定으로서 地代란 土地所有者가 그 土地의 使用者로 부터 徵收하는 貢獻 Tribut이며, 모든 地代는 그 內容에 있어서는 직접적 生産者의 剩餘勞動이며, 혹은 그것이 對象化된 剩餘, 生産物 剩餘價値로 보고 있다. (經濟學大辭典, 博英社, 1964, p. 1386 參照)

### 水産經營學의 本質에 관한 考察

채굴하는 鑛石등도 그와 同一視하고 있는 것이다.<sup>26)</sup>

그러나 오늘날의 水産業(漁業)은 이 農業理論의 地代論을 기초로 하여서는 解決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는 新川傳助가 상세히 설명하고 있으므로 그의 見解를 요약하여 보고자 한다.<sup>27)</sup>

그에 의하면 漁業經營形態가 前資本制的인 家族的 自營生産形態인 漁家經營이 支配的인 경우는 地代의 有無가 아니고 地代에 前資本制的인 經濟外的 強制라고 하는 要素가 강력하게 포함되는 形態의 것이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形態의 地代로서 漁場의 地代에 그대로 適用하려고 한다는 것은 資本制企業과 前資本制企業과의 質的 差異를 도저히 나타낼 수 없는 것이다. 오늘날 漁業을 비롯하여 최근 번창 일로에 있는 養殖業에서도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企業經營으로서의 水産業이란 政府로부터 일정기간의 免許를 받아 免許料(稅)를 지급하며 工業生産과 같은 採算方法에서 勞動者(漁夫)를 고용하여 經營하는 業體이며 賃金과 利潤도 工業과 꼭 같은 法則에서 運營하는 것이다. 이러한 水産業으로 成立하기 위한 地代와 家族的 自營業體에서 成立하는 地代와는 差異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農業과 漁業(養殖業포함)과의 成立條件도 相違하다. 각 자의 기반인 土地와 水의 自然科學的 意義와 社會科學的 意義를 비롯하여 그 生産物의 經濟的 意義의 상위 특히 그 중에서도 資本制 企業의 成立條件에 의한 차이이다. 곧 資本注入의 구체적 形態에도 差異가 있다. 이러한 것을 무시하고 抽象的인 方法에서 水産業을 狹義의 耕作農業과 同一하게 간주하는 것은 漁業에 있어서 生業經營인 漁家經營에 대하여 農業의 家族的 生産經營을 그대로 適用하려고 하는데서 초래되는 모순이라 생각된다. 이것은 漁業의 特徵을 무시하는 잘못된 생각이라 하겠다.

우리 나라에 있어서도 漁家經營이 漁業經營을 代表할 수 있는 時代는 이미 오래 전에 지나갔다. 우리는 社會經濟制度가 前近代性에서 資本制로 質的 移轉을 함에 따라 生産條件의 差가 經濟的 作用을 크게 左右한다는 점을 생각할 때 오늘의 水産業에 있어서도 自然科學的인 側面만으로서의 그의 本質을 正確히 파악할 수는 없는 것이다. 漁業生産經營體에 있어서 아무리 計數上 漁家經營體數가 많고 또한 그것이 自然發生的인 原初的인 生産形態라 하더라도 그것으로서는 오늘날 水産業의 本質을 理解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思考는 水産業의 發達過程을 무시한 沒歷史的 發想이며 또한 이 發想에 있어서 資本制의 企業의 生成自體를 資本主義의 後進性에서만 規定하려고 하는 잘못된 태도에도 기인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말하자면 이와 같은 研究의 자세는 水産業 또는 漁業을 “단순한 漁業” 또는 “고기잡는 技術”로서만 생각하고 그 生産主體도 零細한 家族的 生業形態인 漁家經營形態가 支配形態인 양 간주하여 온 思考에 기인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水産業을 生業經營이라는 觀點만으로서의 金후 精確하게 평가할 수 없을 것이다. 水産業의 올바른 理解는 水産業을 일종의 生産業으로서 認識하고 그것을 進술한 沒歷史的 技術的 觀點에서만이 아니고 經濟學이나 經營學 등의 對象으로서 研究하는 人文社會科學的 分野까지를 포함하는 廣範한 立場에서 分業的으로 研究하는 諸學問의 統合體로서의 産業研究의 자세가 絶실히 必要하다고 생각된다.

지금까지 技術科學 또는 自然科學的 立場에서의 水産業의 研究는 水産業을 産業으로서가 아니라

26) 新川傳助著, 水産經濟研究, 厚生閣, 1968, pp. 13-19 參照.

27) 上掲書.

단순한 技術學으로서 또는 技術學속의 自然科學으로서 理解하려고 하였던 것이며, 그 結果 자연히 水産業의 經濟的基礎는 망각되어 왔던 것이다. 원래 産業이라고 할 때는 水産業이든 다른 어떠한 産業이든지간에 불문하고 그것을 하나의 個別産業으로 취급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때는 그 産業이 담당하는 技術的基礎와 經營的基礎와의 關係를 생각하지 않으면 그 産業의 올바른 理解와 發展 그리고 그의 特徵을 파악하기는 곤란한 것이다. 특히 水産業과 같이 그의 生産活動이 우리의 日常生活圈의 周邊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海上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는 그 産業 자체의 生産에 따른 經濟問題가 技術問題로 무시되어서는 더욱 그러한 結果를 초래하기 쉬운 것이다.

종래 水産業은 研究나 實踐에 있어서 水産業 그 自體의 生産이라는 經濟問題가 주로 漁撈나 養殖 등이라고 하는 技術問題에 지나치게 지배되어 왔던 관계로 그의 發達이 극히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다. 곧 水産業을 漁撈나 養殖으로서 파악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經營와 結合하여 理解하려고 하지 않고 技術과 經營과는 無關係하다는 思考는 지금까지도 지속되는 경향이 있으나 이 思考를 하루속히 탈피하지 않으면 水産業의 發達은 상대적으로 他産業이나 他學問 또는 社會的으로도 더욱 뒤떨어지고 현저한 차이를 가지게 될 것이다.

水産業의 社會科學的研究는 水産業을 個別的 特殊的 産業이라고 하는 觀點에서 水産業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어떤 樣相과 形態의 諸現象에서 社會(科學)的인 諸法則을 發見하고 그리고 그 發見된 諸法則을 他産業과의 比較에서 어떠한 特徵이 있는가를 說明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다만 여기에서 注意하여야 할 것은 特定分野(水産業등)의 社會科學的 研究라 하더라도 보통 그 特殊部門 科學의 研究는 그 分野의 一般的法則에 支配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水産經營學도 經營學一般法則의 支配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그 經營學一般法則만 이해하고 있으면 水産業이라는 個別産業 特有的 經營法則도 자연 理解된다고 하는 思考나 혹은 個別産業 特有的 現象은 經營學 一般法則과는 無關係하다는 思考는 그 어느 것이나 잘못된 사고라는 점에 대하여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水産經營을 支配하는 諸經營法則이란 一般的인 經營法則의 部分的 個別的인 것에 불과하지만 그렇다고 一般經營法則도 아닌 것을 一般法則 처럼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예를 들면 家族的 生産經營이나 혹은 小規模 生業的인 農家の 農業經營(經濟)法則을 가지고 水産業(經營)을 規定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무의미한 것이다. 특히 第2次世界大戰 이후 급격히 發展한 國際公海漁業에 대하여 漁家經營法則이나 農業經濟法則으로 解釋한다는 것은 곤란하다. 최근 海洋의 分割占有 또는 支配思想에 의하여 나타난 領海幅12해리의 確定과 經濟水域 200해리의 承認 등으로 금후 나타날 國際漁業의 變數중에 의하여 水産經營學은 이제 漁家の 生業經營과 水産企業經營으로 크게 兩分되지 않을 수 없으며 따라서 후자의 重要性和 支配力은 점점 높아갈 것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금후 水産業에 대한 本質의 파악은 자연 후자 中心이 되지 않을 수 없으며 따라서 그에 適應한 概念規定이 아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위와 같이 생각할 때 그러한 樣相을 包括하는 概念規定도 과감히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 IV. 産業概念으로서의 水産業

一般的으로 水産業의 經營學的 研究에 있어서 그 研究對象의 性格規定問題는 理論上으로는 無限하고 變動의이며 立場에 따라 달리 規定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規定이 普遍妥當性을 가지



### 水産經營學의 本質에 관한 考察

기 위하여는 客觀的이고도 科學性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水産業의 概念規定에 있어서도 그러한 客觀性과 科學性은 無視될 수 없는 것이다. 이 의미에서 水産業이 먼저 産業概念으로서의 充足要件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하여 파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假定을 設定하여 檢討하기로 한다.

- ① 水産業이 他産業과 區別되며 特定産業으로서의 集團性이 있는가?
- ② 社會的 分業으로서 成立可能性이 있는가?
- ③ 水産業의 生産技術에 專門性이 있는가?
- ④ 그리고 組織化된 生産業으로서의 經營性이 있는가?

의 문제이다.

그러면 다음에서 각 項目에 따라 그에 대한 適否如何를 檢討하여 보기로 한다.

- (1) 水産業이 他産業과 區別되며 特定産業으로서의 集團性을 가지는가?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水産業을 特殊産業視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問題이다. 辭典에 의하면 水産이란 “물속에서 남 또는 그 물건”이라 規定하고 있다.<sup>28)</sup> 이것은 英語의 aquatic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곧 aquatic의 形容詞는 “물의, 물속에 사는, 물속(위)의” 의미가 있으며 名詞로는 “수생동물”이라 규정되어 있다. 여기에서 “물”이란 곧 水界를 뜻한다. 따라서 “水界에서 生産하는 産業”(혹은 事業)을 水産業이라 할 수 있다. 이와같이 물 곧 水界란 흙 土地 곧 陸界에 對應되는 用語이며 이 의미에서 보면 水産業 또는 水界産業은 陸界産業 혹은 陸上産業에 對應되는 概念으로서 물에서, 물속에 사는, 물속에서, 물위에서 이루어 지는 모든 産業을 總稱하는 것으로서 곧 물과 不可分の 關係에 있는 産業을 총망라하는 概念이라 할 수 있다.

이와같이 産業上에서 물 곧 水界라 할 때는 그 水質이 淡水이든 鹹水이든 불문하나 그 주류는 多目的의 公有水面을 뜻하므로 자연 水界에서 가장 광범하고 水量이 많은 鹹水인 바다(海洋)로서 代表하는 경우가 많다. 이 의미에서 水産業이라 할 때는 公有水面을 利用하는 形態이며 좁게는 海洋의 利用形態라고도 할 수 있다. 公有水面의 利用形態는 물에서 이루어지는 事業, 물속에 사는 것(生物)을 利用하는 事業, 물속에서 이루어 지는 事業 및 물위에서 이루어 지는 事業 등 물을 基底로 하거나 물과 不可分の 關係에서 이루어 지는 産業 또는 事業을 총망라 한다고 하겠다.

구체적으로 보면 水産業에는 水界의 生物를 對象으로 生産하는 漁業 養殖業과 그 生産物의 加工業을 비롯하여 非生物를 對象으로 하는 것으로서 물에서 소금을 抽出하는 製鹽業과 金이나 우라늄을 抽出하는 기타 海水工業, 물속에 어떤 構造物을 建設하는 海洋構造物産業, 물위를 달리며 貨物과 사람을 運搬하는 海運業 등등이 있는데 이외에도 오늘날 海洋産業이라고 지칭하는 潮力發電 및 水力發電業, 물을 利用하는 水泳場 등의 레저業도 이 水産業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종래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水産業 곧 水界生物만을 對象으로 하는 漁業(Fishery), 養殖業(Fish Farming), 水産 加工業(Fish Processing) 등의 水界生物를 基底로 하여 形成되는 事業만을 指稱하는 水産業이란 위에서 규정한 水産業(aquatic industries)에 비하면 縮小概念이다. 이점에서 前者를 廣義의 水産業(aquatic industries)이라 하고 後者를 狹義의 水産業(Fisheries)이라 規定할 수도 있으며 이것은 廣義의 漁業으로 규정하는 것이 明確하다고 생각된다. 이에 대하여 종래 일

28) 最新大字典, 弘宇出版社.

반적으로 말하는 漁業(Fsiheries) 養殖業 또는 水産加工業등은 역시 廣義의 漁業概念에 속하는 下位概念이며 따라서 下位概念의 漁業은 狹義의 漁業이라 규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水産業의 概念을 廣義와 狹義의 둘로 규정할 때 廣義의 水産業은 “水界를 기저로 하는 産業”이라 규정하고 狹義의 水産業은 “水界의 生物을 기저로 하는 産業”이라 요약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볼 때 廣義의 漁業概念에 해당되는 狹義의 水産業을 그간 社會에서 水産業이라 通用하여온 理由는 첫째, 우리 人間이 自然을 상대로 하여 狩獵과 漁撈로 생활하던 原始社會에서 벌써 水界의 漁類나 貝介類 海藻類를 採取하여 왔다. 따라서 水界利用 특히 海洋利用의 가장 初期形態는 生物利用 形態인 漁撈이다. 이것이 交換經濟가 發達한 現代社會에서도 지속되고 있는 것은 生業의 事業으로서 뿐 아니라 資本企業으로서도 營爲될 수 있었다는 점이다. 둘째 이것을 日本人들이 大事業 大産業化하기 위한 目的에서 水産業이라 稱한데서 우리가 그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廣義의 水産業이 陸界産業(陸上産業)에 對應되는 産業의 總稱이며 또한 狹義의 水産業이란 이 廣義의 水産業중에서 生物을 기저로 하는 産業이라 할 때 그 下位概念으로서 狹義의 漁業 養殖業 漁獲物加工業 등등도 他産業과의 區別은 물론 水界産業의 下位概念에 속하는 諸産業 相互間에도 그 區別은 명백히 되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狹義의 水産業인 廣義의 漁業에 대하여 그 本質을 더욱 明白히 하기 위해 他産業과의 關係를 간단히 고찰하여 보기로 한다.

狹義의 水産業 곧 廣義의 漁業이란 水界에 서식하는 生物을 基底로 하는 産業이기 때문에 水界生物을 기본표식으로 한다. 水界生物을 事業의 對象으로 할 때 그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水界生物資源 곧 狹義의 水産資源(Fisheries Resource) 또는 漁業資源(Fisheries Resource)<sup>29)</sup>이라 한다. 지금까지 우리 人間이 利用하는 漁業資源은 水界라고 하는 自然속에서 生産될 수 있는 自然物이 주류를 형성하여 왔다. 따라서 自然狀態에 있는 水界生物을 採捕하는 人間行爲를 내용으로 하는 點에서 水産業(狹義以下同)을 原始産業이라 하여왔다. 그러나 今후에는 品種改良 發生 飼育 採捕 등 그의 全生産過程과 棲息環境造成까지를 完全히 人爲的 操作에 의하여 수행하고 그에 따라 完全養殖物이 産出될 것이 예상된다. 그러한 경우에도 漁業을 原始産業이라고만 규정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疑門이 가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 在來의 漁業을 原始産業이라 할 때 同一範疇에 속하는 農業 鑛業 등과의 사이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알아보자.

農業은 土地所有의 基礎위에서 成立하고 있으며 鑛業은 鑛業權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異質的이라 하겠다. 이 중에서 生物을 目的對象物로 하는 農業과 漁業을 相互 비교하여 보면 水産業의 目的對象物은 進술한 바와 같이 自然系의 물과 不可分의 一體를 이루어 存在하고 있는 水界動物이며 農業의 目的對象物은 陸上に 存在하며 흡과 不可分의 存在인 陸界動物이다. 따라서 이 兩者는 그의 存在條件을 달리하고 있는데서 서로 異質性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또한 이 兩者는 다같이 原始産業이라 하지만 兩者間은 물론 다른 原始産業과도 현저한 異質性을 가지는 特殊産業이라 할 수 있다.

29) 英語의 Fisheries Resource는 漁業資源과 水産資源으로 번역되나 水産資源이라 할 때는 “狹義의 水産資源”이라 번역할 필요가 있다.

### 水産經營學의 本質에 관한 考察

이와 같은 異質性 혹은 特殊性을 가지는 水産業은 그것이 우리나라와 같은 어떤 特定の 限定된 地域에서만 存在하는 것이 아니고 全世界의 沿岸諸國에 集中的으로 널리 存在하고 있는 아주 普遍的인 産業種의 하나이며 따라서 그것은 地域別로 共通의 社會的 感情, 地域的 情感을 달리 하면서 漁業이라는 同種集團을 形成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一定地域共同社會에 集團하는 것으로서 그의 社會的 生活的 環境과 自然的 人的 環境을 均衡하고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漁業도 地域的 同一性에 의한 變動이 個個의 立場에서 一般化되고 波及되며 社會的 共同的 나아가서는 政治的 問題로 가지 形成되는 것이라 하겠다. 現實으로 우리나라의 경우만 보더라도 1984年末 現在 全國의 漁業經營者 家口數는 약 127천戶이며 그 중에서 企業的인 漁業經營體數는 약 48천 業體로 추산된다 그것이 沿岸에 약 1,400餘個의 漁村契를 形成하고 있다.<sup>30)</sup> 여기에 水産加工業과 流通業體 및 기타 水産 關聯業體까지를 포함하게 되면 그 數는 훨씬 增加하게 될 것이다. 이들 同種集團으로서의 水産業이 生産하는 漁獲量은 1984年度 약 247.7萬%, 全世界의 漁獲量은 약 8천277萬%(1984)에 이르고 있다.<sup>31)</sup>

이와 같이 漁業은 陸上의 代表的 産業인 工業 商業 農業 등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만 아니라 汎世界的인 産業의 一種이며 現存하는 世界 諸産業중에서 가장 歷史가 오래된 重要集團産業중의 하나이고 또한 금후에도 消滅되지 않고 永續性을 가지는 將來의 有望産業이기도 하다. 그 理由는 여기에서 새삼 再論할 것도 없으나 現在까지 開發된 漁場이 地球表面積의 71%에 해당되는 海洋의 극히 일부분이며 그것도 주로 大陸棚의 일부에 해당되는 沿近海水域에 서식하는 自然物의 採取, 捕獲에 한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海洋과 陸水의 未開發漁場과 또한 이 海洋에 대하여 農業生産方式과 같은 海洋耕作方式(養殖)의 적용으로 全海洋을 養殖場으로 開發한다면 漁業은 未來産業이며 前途가 밝은 産業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開發可能性은 한낱 理想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開發可能性이 거의 確實視되고 있다.

(2) 다음으로 水産業이 社會的 分業으로서 成立可能한가의 問題이다.

이 問題에 대하여는 여기에서 詳論할 必要도 없이 當然하다고 하겠다. 그 이유는 간단히 말하면 水産業은 古來로 부터 人類文明의 發達과 더불어 存在하여 왔으며 世界沿岸到處에 存在하고 있는 歷史上 가장 오래된 産業의 하나이다. 人類文明의 發達過程에서 보면 그간 많은 종류의 새로운 産業이 發生하여 많은 分野로 區分되고 있으나 水産業은 여전히 他産業과는 다른 特殊産業으로서 그의 獨自性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社會的 分業의 位置를 그대로 固守하고 있다. 그것은 分業의 原則에 입각하여 水産業이라고 하는 一群의 集團을 形成하여 生産을 專門化함으로써 利益을 얻을 수 있으며 社會的으로는 交換의 原則에 충실히 適應하여 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한 두 世紀동안 工業이나 商業 및 서비스業 등의 2次 3次産業의 發達로 비록 그 相對的 位置(比重)는 弱化되어 왔으나 最近 부존資源의 有限性이 認定되면서 부터 生物을 기저로하는 更生資源의 重要性이 인정되고 農林畜産業과 더불어 水産業에 대한 認識이 새로워 지고 未來産業, 永久不滅産業으로서 脚光을 받기 시작하고 있다.

30) 1985 水産業動向에 관한 年次 報告書, 水産廳.

31) FAO, Yearbook of Fishery Statistics, 1985.

특히 水産資源은 人間이 生存하는 地球의 71% 以上을 占하고 있는 海洋이란 水界와 거기에 河川 湖沼 등의 淡水界를 포함하는 水界全體에 광범하게 分布하고 있으며, 그 利用面에 있어서도 水界는 表面利用만이 아니라 多面利用性(多面化)이라는 엄청난 生産力과 生物의 更生力은 금후 水産業의 相對的 價値를 현저히 提高할 것이다. 그리고 水産業內部에 있어서도 漁業 養殖業 등의 生産方式의 分化와 차이 및 그 生産物의 利用方法 또는 그에 所要되는 資材 施設 機器 등의 製作과 供給 등에 관련된 業種 등의 細分化 傾向은 水産業의 社會的 分業의 意義를 더욱 提高할 것이라 생각된다.

(3) 水産業의 生産技術은 專門性이 있는가의 問題이다.

漁業生産의 成立條件으로서는 첫째 水界에 있어서 그의 目的對象物인 水産動物이 存在하여야 한다는 점 둘째 그 目的對象物에 勞動을 加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場所) 셋째 그 投入勞動에 대한 補償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들고 있다. 이 중에서 生産技術과의 관계는 첫째와 둘째의 條件을 들수 있다. 위에서 目的對象物을 人間이 支配할 수 있는 상태로 옮기거나 한다는 것은 自然狀態에서는 採捕를 통한다. 採捕란 目的物을 人間이 支配할 수 있는 상태로 옮기는 人間行爲이나 거기에는 技術이 介在(入)되는 것이다. 따라서 目的物을 採捕하기 위하여는 그것이 살아있는 生命體이기 때문에 그의 生態 生理를 파악하여 그에 相應하는 用具(手段)를 適用함으로써 捕獲하도록 하는 것이 合理的이다.

水界에 서식하는 生物은 一定場所에 定着하는 生物도 있으나 광범한 水域을 水平 垂直으로 移動하며 서식環境과 먹이를 求하고 있다. 따라서 目的對象物은 넓은 水界에 골고루 分布하여 存在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고 또한 있다가도 없어지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目的物을 採捕하기 위하여는 그 目的物이 어떠한 環境條件下에서 가장 많이 存在하며 어떻게 行動하는가의 狀態를 파악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學問이 水産生物學 水産生物生態學 또는 水産生物環境學 등이며 여기에서 供給하는 知識을 토대로 하여 最小費用에 最大生産이라는 經濟原則下에서 合理的으로 生産하는 것이 捕獲活動인 것이다. 이러한 捕獲活動에 適用되는 人間行爲를 漁業技術이라 한다.<sup>32)</sup> 이 漁業技術을 目的對象物에 適用하는 人間行爲를 勞動이라 한다. 따라서 勞動을 加한다는 것은 그 目的對象物을 採捕하기 위하여 適切한 用具와 裝置를 目的物에 適用하고 그것을 合理的으로 運用하여 生産을 效率化하는 것을 뜻한다. 곧 採捕를 내용으로 하는 專用技術을 行使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漁具와 漁法이란 技術은 그것이 目的對象物의 種類와 性質에 따라 또는 그것을 적용하는 場所에 따라 상이하므로 이러한 各種의 要因(變數)을 結合하여 綜合的 科學的으로 연구하여야 한다. 이러한 學問을 漁具漁法學이라 한다. 이와 같이 漁業에 관계되는 諸技術學을 總稱하여 漁業技術學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技術이라 하면 “學問으로 배운 理論을 실제로 응용하는 제주”<sup>33)</sup>나 “人類가 自然을 人間生活에 유용하도록 개발하여 가공하는 일”을 뜻하므로 그러한 漁業技術은 고도의 專門性을 가진다.

(4) 水産業이 組織화된 生産業으로서 經營될 수 있는가의 問題이다.

위에서 考察한 技術과 勞動을 目的物인 水界生物에 科學的 合理的으로 結合하여 산출하는 것이

32) 일반적으로 技術이라 하면 “學問으로 배운 理論을 실제로 응용하는 제주”나 “人類가 自然을 人間生活에 유용하도록 개발하여 가공하는 일”을 뜻한다.

33) 실용 국어사전, 금문사, 1965.

### 水産經營學의 本質에 관한 考察

生産이다. 원래 生産이란 自然(水界), 資本, 勞動의 3要素의 結合에 의하여 成立되는 것이다. 따라서 水産生産도 이 點에 있어서는 他産業과 마찬가지로이다. 漁業이 成立되기 위하여는 그 目的對象物로서 魚類, 貝類, 海藻類 등의 水産動植物이 存在하여야 하고 그리고 그 目的對象物을 採取採捕하기 위하여는 그의 生産手段이 必要하다. 그리고 거기에 또한 이 兩者를 結合(match) 시킬 수 있는 사람의 存在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諸要素의 結合에 의하여 비로소 生産活動이 수행되는 것이다. 漁業에 있어서의 生産은 가장 단순한 형태로서는 人間이 맨손으로 貝類를 캐거나 海藻類를 뜯는 단계에서 漁具를 使用하고 나아가서는 漁船을 타고 먼 外海에 까지 出漁하여 捕獲하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많은 階層이 存在한다. 그것을 目的面에서 보면 家族의 生活維持를 위한 生産活動(漁業經營) 단계를 거쳐 오늘날에 와서는 막대한 資本을 投下하여 그 投下資本의 増殖을 目的으로 하는 巨大資本企業의 단계까지 크게 發展되고 있다. 이러한 단계적 區分에 의한 生産活動은 段階別 時代別로만 存在했던 것이 아니고 19c 이후 同一地域, 同一年代에 있어서 現今에 있어서도 서로 혼합하여 共存하고 있다. 그러나 現今에 있어서 漁業의 主流는 企業단계의 水産業時代에 와 있으며 또한 事業이라고 하면 그 規模의 大小에 관계없이 그의 目的은 “돈을 벌어야 한다”는 營利目的에 支配되고 있다. 바꾸어 말한다면 漁業이란 産業은 規模의 大小를 不問하고 資本主義社會에 있어서는 自家消費를 目的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市場販賣目的 곧 營利目的으로 生産하고 있다.

營利目的의 生産原理는 經濟性原理로서 “最小費用과 最大生産”原則에 支配되고 있으므로 그의 成敗는 前述한 바와 같은 生産3要素의 結合을 合理化하여 가는데 있다. 따라서 水産業이란 目的對象物과 手段으로서의 生産用具를 科學적으로 結合하고 그에 종사하는 人的 資源을 適切하게 合理的으로 組織하여 運營하는 데서 그 成果를 기대할 수 있다. 다시말하면 水産業은 目的對象物의 研究로서 水産物의 生態, 生理, 飼料에 관한 研究와 그의 棲息環境으로서의 漁場(環境)論, 海洋學, 氣象學 등의 研究와 또한 目的物을 捕獲하기 위한 生産手段의 구성과 運用에 관한 것으로서 漁具漁法에 관한 研究 등등의 結果를 기초로 하여 自然 資本과 勞動力의 結合을 効率化하기 위한 漁業生産機構의 確立과 그의 高度活用을 위한 高機能化의 研究와 實施가 適切히 要求되고 있다.

더욱이 水産業의 目的對象物은 陸上産業의 目的物과는 달리 平均水深이 2000m以上에 이르는 광활한 一衣水帶라는 海洋에 散在하며 廻遊行動을 하는 生物이 主軸이 되어 있으므로 그의 生産은 다른 어떠한 産業보다도 前述한 3要素의 結合을 더욱 組織化한 專問經營이 要求되고 있다.

따라서 水産生産은 進술한 技術的 管理에 의해서만 達成되는 것이 아니고 그에 필요한 資金의 調達, 漁船 漁具의 購入, 勞務者의 採用과 配置, 監督, 指揮와 그의 損益計算 등 事業의 成果(損益) 判定(評價)등 일련의 計算을 하여야 한다. 이것을 經營管理라 한다. 水産業이 産業으로서 維持持續되고 發展하기 위하여는 技術機能 뿐 아니라 管理機能도 充實히 하고 專門化함은 물론 融和하는 組織的인 經營管理가 필요하다. 이와 같이 水産業의 經營組織管理는 규모에 의하여 그의 適用에는 差異가 있으나 基本的으로는 一般企業의 經營管理方式과 共通성을 가진다고 하겠다.

### V. 水産經營學 研究對象으로서의 水産業

水産業의 概念은 産業으로서의 概念이어야 한다. 그러나 水産經營學이 經營學의 한 部門이고 또

한 水産業(狹義)이 經營學의 研究對象으로서의 概念의 下位 또는 特殊概念이라 생각할 때 經營學의 立場에서 水産業의 概念을 다시 한번 定義하여 두고자 한다.

前述한 바와 같이 水産經營學의 立場에서의 水産業의 概念規定으로서는 日本의 尹豆川淺吉 八木 庸夫등이 있으나 그들의 規定은 日本水産學界의 傳統的 見解인 技術的 觀點과 蛭川虎三의 水産經濟學의 見解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sup>34)</sup> 이에 대하여 企業經營의 觀點에서 私見을 再整理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水産業이란 社會經濟를 구성하는 單位體이다. 따라서 水産業이 社會經濟를 구성하는 單位體(産業)로서 또한 그것이 經營學의 研究의 對象이 되기 위하여는 “水産業 그 自體가 어떠한 統一意思에 의하여 水界에 대해 반복적 계속적으로 行하여 지는 生産의인 事業”이라야 한다고 생각된다.

여기에서 “統一意思란 人間欲求가 個人을 초월하여 事業體(經營)에 歸一하므로서 一體化하려고 하는 의지”를 의미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그 統一意思란 그 事業에 참여하는 多數人에 의하여 設定되고 그리고 그것을 達成하기 위하여 그에 參與하는 多數人이 그 事業體에서 有機的으로 行動하려고 하는 行動指針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統一意思의 실시는 特定の 個人에 의하거나 多數人의 結合에 의한 共同體 곧 國家 혹은 地方公共團體는 물론 어떠한 종류의 團體에 의해서도 행하여 질 수 있으며 또한 그것이 營利를 目的으로 하든 非營利를 目的으로 하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 多數人이 集合하는 共同體에 있어서는 個人의 目的設定과 共同體의 目的設定이 달리 될 수도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個人의 目的이 共同體의 目的을 통해서 달성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의미에서 共同體의 目的은 그에 參與하는 多數人의 統一意思에 의하여 결정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事業體에 參與하는 個個人의 실천行動은 각각 個別的으로 수행된다 하더라도 그 行動은 이미 設定된 統一意思에 의하여 이루어 지는 것이다. 만약 여기에서 이미 設定된 統一意思와 달리 行動하거나 活動한다면 그것은 그 統一意思에 違背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行爲者나 行動者는 결국에는 그 事業體로부터 결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다음에 “水界에 대하여”란 前述한 바와 같이 水界란 陸界에 對應되는 것이므로 곧 바다와 內陸의 河川, 湖沼, 등에 存在하는 물의 總稱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狹義의 경우는 전술한 바와 같이 그 水界에 서식하는 水界生物을 의미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人間行爲 또는 行動의 對象이 되는 漁業 資源을 의미하는 것이다. 곧 통속적으로 말하는 水産生物 또는 水産資源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水界에 대하여”란 “目的對象物로서의 水産資源에 대하여”라고 하는 의미로 간주하여야 한다.

그리고 “반복적 계속적”이란 같은 종류의 人間行爲나 行動이 일정한 과정을 반복하여 이루어지고 그리고 일정기간 이상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같이 人間行爲나 行動이 반복적 계속적으로 수행되게 되면 그곳에는 일정한 軌導性이 나타나게 되므로 나아가서는 그것의 標準化가 가능하게 된다.

그리고 “生産이란 生産要素를 結合的으로 사용함으로써 새로운 財貨를 獲得하는 것”<sup>35)</sup>이라 定義하고 있으므로 이 立場에서 보면 水産業이란 人間이 水界 곧 目的物인 水産資源에 대하여 勞力을 가하

34) 本論文 Ⅱ, 從來의 諸概念 參照.

35) 經濟學大辭典, 博英社, 1964, p. 810.

### 水産經營學의 本質에 관한 考察

여 우리의 欲求를 충족할 수 있는 財貨產出이나 製造하는 일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換言하면 生産이란 人間이 水界에 依存하고 있는 水産資源을 利用하기 위하여 그에 作用하는 人間行爲나 行動을 의미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人間行爲나 行動에는 그것이 일시적으로 혹은 간단적으로 수행되는 것과 일정기간 이상 계속적으로 수행되는 것으로 兩分하거나 또는 그것이 社會에 廣範하게 적용되는 보통 말하는 상식적인 行爲와 特殊行爲로 兩分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水産業에 대한 人間行爲 또는 人間行動을 兩分할 때 前者에 해당되는 것은 주로 營利目的에서 수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후자의 경우는 學校의 實習練修와 調查研究機關의 調查研究의 目的에서 또는 日常生活에 있어서의 餘暇善用이나 心身の 疲勞 회복 및 단련을 目的으로 잠시 수행하는 것이므로 生産活動에서는 제외한다.

다음에 事業이란 “일정한 計劃과 目的에 基因하여 經營하는 業”<sup>36)</sup>를 의미하고 있다. 여기에서 일정한 計劃과 目的이란 앞에서 考察한 統一意思에 의하여 그 目的이나 計劃이 수립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하여 資本과 勞動을 투입하여 그것과 水産資源을 結合(match)시킴으로써 人間이 필요로 하는 水産物이란 財貨를 產出 또는 製造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水産物의 產出 또는 製造를 營利目的으로 수행하거나 또는 國家 公共團體에서와 같이 經濟發展의 促進 또는 業界의 秩序維持를 위하여 營利性을 떠난 目的 곧 非營利 目的에서 經營할 수도 있는 것이다.

위에서 考察한 바를 總體的으로 요약하여 보면 결국 “水産業이란 일정한 統一意思에 의하여 水界에 서식하는 水産資源을 目的對象으로 人間行爲나 人間行動을 반복적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事業”이라 規定할 수 있다.

## VI. 零細水産業과 水産企業

(1) 水産業을 이상에서와 같이 生物資源을 基底로 한 事業으로 規定하면 현실에 있어서의 水産業은 沿岸에서 맨손으로 貝類나 海藻類등을 採取하여 家族의 生計維持를 하는 것으로 부터 數千 내지 數萬톤에 이르는 大型漁船을 주축으로 經營하는 大資本企業에 이르기까지 많은 階層을 形成하고 있다.

이러한 多段階의 水産業을 理解하기 위하여는 그것을 몇 階層으로 區分하여 考察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로 되어 있다. 그것은 水産業의 本質을 理解하는데 있어서 階層區分方法이 가장 有效하기 때문이다. 곧 각 階層間의 特性을 理解할 수 있고 또한 거기에서 水産業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으므로 行政이나 實務上에서도 對應措置를 강구하기 쉽기 때문에 이 方法이 널리 適用되고 있는 것이다.

水産業의 階層區分은 目的과 方法의 적용에 따라 다르나 行政上, 學術研究上의 目的에서 決定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零細水産業과 水産企業으로 兩大別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sup>37)</sup> 이 兩者의 區分에도 여러가지 基準의 設定이 있을 수 있으나 여기에서는 먼저 이 兩者間에 觀念上의 區分이 存在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檢討하여 보기로 한다.

36) 最新大字典, 弘宇出版社.

37) 一般的으로 産業規模의 區分에서 가장 광범하게 使用되고 있는 것은 零細企業, 中小企業, 大資本企業이기 때문이다.

(2) 여기에서 零細水産業이란 일반적으로 말하는 漁家漁業(Family(Fishermen's) Fisheries), 漁家養殖業(Family Fish Farming) 또는 家内工業的 水産加工業(Household Fish Processing) 등을 포함하는 總稱이다. 이러한 零細水産業은 資本主義經濟體制下에 있어서 그의 經營目的은 역시 營利追求에 있다. 이것이 같은 原始産業의 범주에 속하는 農業의 農家經營과도 다른 점이다. 우리나라 農家に 있어서 營爲되는 農業이란 주로 自家消費를 目的으로 하여 營爲되고 있다. 곧 農家に 있어서 農産物이란 家族의 生命維持를 위하여 自家에서 消費할 것을 基本目的으로 하고 거기에 剩餘物이 있다든가 또는 自家消費量의 일부를 節約하여 그것을 市場에서 賣却하여 現金化하고 그것으로서 家族의 生活必須品の 구입과 租稅公課金 또는 家族의 教育訓練資金 등등으로 支給한다. 따라서 農家生産의 主目的은 家族의 生命維持나 安寧秩序의 維持에 있는 것이므로 그 生産物自體를 처음부터 市場에서 販賣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水産物生産에 있어서는 아무리 규모가 작은 零細水産業이라 하더라도 그 生産物自體를 自家消費의 目的으로 生産하지는 않는다. 水産物은 米麥 등의 農産物과 같이 우리의 主食物이 될 수 없으며 副食用 등에 불과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市場販賣를 目的으로 生産한다. 곧 販賣에 의하여 家族의 主食物을 구입하거나 其他 家計費를 조달하는 것을 目的으로 영위한다. 이와 같이 零細水産業에 있어서의 漁業은 水産企業에서와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營利를 目的으로 하고 있으나 그 營利目的自體의 觀念은 基本的으로 달리고 있다. 零細水産業에 있어서는 營利追求라 하더라도 그것은 家族의 生計主義原則에 입각하여 營爲하고 있다. 따라서 零細水産業에 있어서는 事業經營上의 問題보다 家族의 生計維持上의 問題에 의하여 事業이 支配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水産企業에서는 家族의 生計라는 觀念은 전혀 存在하지 않으며 오로지 어떻게 하면 그에 投下한 資本에 대하여 보다 많은 増殖(果實)을 가져올 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그의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事業體의 安定維持와 發展을 어떻게 하면 도모할 수 있는가에 支配되고 있다. 이와 같이 漁業이란 그 規模의 大小에 관계없이 一般的으로는 營利目的으로, 營爲되고 있으나 그 營利目的自體의 觀念에 있어서는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兩者간에 差異가 있다. 이와 같이 零細水産業과 水産企業間의 營利追求를 觀念上 區別한다면 實際에 있어서 이 兩者를 어떻게 識別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考察하여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理論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實際와 一致性이 없다면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다음에 節을 달리하여 이에 대하여 考察하여 보자.

(3) 現實에 存在하는 水産業중에서 零細水産業과 水産企業을 區分하는 具體的인 規정은 우리나라의 경우 存在하지 않으나 日本에 있어서는 零細水産業에 해당되는 漁家漁業과 水産企業의 區分을 保有漁船의 噸수를 基準으로 하고 있다. 곧 隻數에 관계없이 그의 保有漁船 噸수의 合計가 10톤 미만일 때는 漁家漁業이라 하고 그 이상일 때는 水産企業으로 규정하고 있다.<sup>38)</sup> 그러나 이러한 區分基準의 設定은 그 國家社會의 經濟事情에 따라 流動的이며 또한 經濟發展의 程度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러한 基準은 上向設定되는 경향이 있으며 또한 日本의 基準이 곧 우리의 基準이 되는 것도 아니다. 여기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零細水産業과 水産企業의 區分을 어떻게 規定하여야 하는가에 대

38) 日本은 1949 漁業센사에서는 漁業從事者數로 區別하였으나 그후 漁船의 合計噸수로 전환하고 있다.



### 水産經營學의 本質에 관한 考察

하여 所見을 정리하여 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企業의 規模를 決定하는 基準으로서는 賣出額, 生産額, 附加價值額, 從業員數, 資本金額, 土地面積, 馬力數, 設備能力 등 여러가지가 있으나<sup>39)</sup> 실제로는 從業員數, 資本金額 (또는 總資產額) 등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水産業의 規模를 決定하는 一般規準은 水産業關係法規나 行政上의 處務規定에도 없으므로 여기에서는 그의 準用基準으로서 商法과 中小企業基本法の 規定을 參考하여 考察하기로 한다.

商法에서는 企業의 規模가 작은 商人을 小商人이라 하고 이것에는 支配人 商號 商業帳簿와 商業登記에 관한 規定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sup>40)</sup> 小商人의 범위는 資本金 50만원 미만의 商人으로서 會社가 아닌 者<sup>41)</sup>라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것을 水産業에 적용하기는 곤란하다. 다음에 中小企業基本法에서 보면 中小企業의 범위를 ① 工業 기타 製造業, 鑛業, 運送業, 建設業 기타 業種(第2號에 제기하는 業種은 제외한다)을 주된 事業으로 經營하는 者로서 상시 사용하는 從業員數가 300人 이하(建設業은 50人 이하)이거나 資産總額 5億원 이하인 者 ② 商業 기타 製造業과 관련 없는 서어비스業을 주된 事業으로 經營하는 者로서 상시 사용하는 從業員數가 20人 이하이거나 資産總額이 5千萬원(都賣業은 2億원) 이하인 者<sup>42)</sup>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同法 第9條 (零細企業)에는 “상시 사용하는 從業員의 數가 5人이하의 事業體를 零細企業이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의 規定에서 보면 水産業은 第2條 ①의 “기타 業種”에 포함 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 이유는 水産業法이나 水産業協同組合法 등 水産關係法規에서도 이에 유사한 規定이 없으므로 特別法의 規定이 없는 한 또는 中小企業基本法상에서도 水産業에 대한 구속조항이 없는 한 水産業에 있어서 中小企業의 規定은 이 中小企業基本法の 規定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水産業에 있어서 中小企業에 해당되는 業體規模는 상시 從業員 300人 이하, 資産總額 5億원 이하의 業體로 규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 中小企業規模 이하의 水産業은 中小企業基本法 第9條의 規定에 의하여 零細水産業이라 할 수 있고 따라서 中小企業規模 이상의 水産業體는 大水産企業으로 규정할 수 있다.

다만 여기에서 주의하여야 할것은 零細企業의 경우는 상시 사용인 수에서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水産業의 경우도 “상시 사용하는 從業員數 5人 이하”라는 조건만으로서 零細水産業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水産業에 있어서는 漁船漁業이든 養殖業이든 혹은 漁獲物 加工業이든 資産總額에는 관계없이 從業員數의 면에서 상시 사용인이 5人 이하면 零細水産業에 해당된다고 생각된다.

그러면 여기에서 앞에서 考察한 觀念상의 區分과 中小企業基本法상의 規定에 어떠한 一體性이 있는지 또는 모순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考察하여 보기로 하자.

(4) 앞절에서와 같이 상시 사용인 5人을 기준으로 零細水産業과 水産企業을 구별할 때 實質과 形式을 一體化시키는 妥當性이 인정될 수 있는가 없는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여기에서는 投下勞動과 所得面에서 양자의 관계를 考察하기로 한다.

39) 末松玄六著, 獨立企業論, 다이킨드社, p. 55.

40) 商法 第9條.

41) 小商人의 범위에 관한 件, 1962. 12. 29. 1104號.

42) 中小企業基本法, 1966. 12. 6 法律.

먼저 勞動에서 보면 漁船漁業을 예로 들 때 船員 5人일 때 그의 구성이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또는 兄弟 등으로 구성되는 自家勞動이 3人(①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②아버지, 아들兄弟)이면 他人勞動(雇入)이 2人일 때 합계 5인이 된다. 그리고 自家勞動 2人(① 아버지, 아들 ② 아들兄弟)이면 他人勞動 3人으로서 합계 5인이 된다. 이 두 유형을 비교한다면 전자의 경우는 自家勞動 中心이며 他人勞動은 종속적이다. 이러한 경우 他人勞動은 전통적으로는 血緣, 地緣의 關係에 있는 평소 의 중의 사람들 중에서 採用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 유형에서는 漁業者의 家計와 經營(事業)이 거의 未分離된 상태이며 他人勞動의 報酬額(年)도 명백히 결정하는 일도 없이 그때 그때의 漁獲成果에 따라 漁業者의 생각이나 기분에 따라 支給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므로 雇入者인 漁夫는 報酬(보통은 깃가림 分配)에 대하여 불만이 있더라도 自己消化를 하여 계속 乘船을 하거나 또는 下船을 한다. 이 경우도 血緣, 地緣關係에서 또는 만일의 경우를 생각하여 불만을 나타내지 않고 조용히 떠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형태의 경영상의 特徵은 漁業의 計算이 家計와 未分離된 상태에서 복잡하게 혼합되어 使用되므로 자연 生計主義에 支配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는 점이다.

다음으로 후자에 있어서는 自家勞動 2人 他人勞動 3人으로서 곧 他人勞動 中心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 형태에서의 他人勞動은 전자와 같이 血緣性, 地緣性은 여전히 탈피하지 못하나 家計와 分離된 經營상태 곧 漁獲成果分配를 明白히 하여야 하므로 자연 漁業經營計算도 他人勞動이 남득될 수 있는 정도로 명확하게 이루어 져야 한다. 곧 漁夫(勞務者) 個人이나 勞使間의 分配 率(率)과 깃가림 賃金計算에 있어서도 相互 남득가능한 線에서 결정되게 된다.

특히 최근에 와서는 전자와 같이 家計와 經營이 불분명하거나 깃가림 賃金制 등 經營計算이 불명료 하면 他人勞動者는 乘船을 거부하거나 곧 下船하여 移動하므로 勞務調達上 대단한 곤경에 빠진다. 近來에 와서 漁夫(勞務者)들의 意識도 開花되어 機會勞動賃金を 理解하고 있으므로 血緣性이나 地緣性에 크게 구속받지 않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 따라서 후자는 전자에 반하여 家計와 經營의 分離가 분명하고 경영도 資本主義的 賃金勞動에 의하여 支配되기 때문에 經營者(漁業者)도 資本增殖의인 營利追求를 目的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와 후자는 다같이 家計와 經營이 同一家庭에서 수행되므로 場所的으로는 未分化되어 있는 상태에 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皮상적 形式的인 문제로서 實質的으로 兩者의 分離를 억제하는 요소는 되지 못한다. 따라서 本質的으로 家計와 經營이 分離되고 있다면 그러한 事實만으로서 場所와는 無關하게 經營을 獨立的으로 파악할 수 있는 對象이 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水産事業은 獨立企業으로 認識할 수 있을 것이다.<sup>43)</sup>

위에서 考察한 바와 같이 家計와 經營의 分離가 可能한 水産業은 勞動力의 구성에서는 自家勞動과 他人勞動의 比率이 各 3:2에서 2:3으로 移轉되는데서 明白히 드러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볼 때 營利性의 觀念에서 零細水産業과 水産企業의 區分基準은 상시 사용인 5人 이하와 이상으로 하는 것이 妥當性을 가진다고 생각된다.

다음에 漁業者의 所得面에서 兩者의 異質性을 追求하여 보자.<sup>44)</sup> 說明의 편의상 漁家所得 = F, 漁業所得 = F', 漁業이외의 所得 = E라 할 때 漁家所得의 類型을 다음과 같이 區分할 수 있다.

43) 獨立企業論에 대하여는 末松玄六著, 獨立企業論, 參照.

44) 經營學에서는 所得概念을 별로 사용하지 않으나 零細業者의 경우는 다양한 收入源泉을 가지므로 이의 總合概念으로 사용한다.

①  $F = F'$

②  $F = F' + E \therefore \begin{cases} F' > E \dots\dots\dots ②-1 \\ F' < E \dots\dots\dots ②-2 \end{cases}$

③  $F = E$

여기에서 ①의 경우는 漁家所得이 오로지 漁業所得만으로 구성되고 있는 경우이다. 그러나 엄격하게는 漁業이외의 所得이 전혀 없는 경우만이 아니고 漁業이외의 所得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漁家の 所得構成면에서 무시하여도 무방할 정도의 小額에 불과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이다.

그리고 ②의 경우는 漁業이외의 所得이 漁家所得構成상 전혀 무시할 수 없는 정도가 되었을 경우를 의미한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그 漁業이외의 所得이 고려되어야 할 정도는 되지만 아직도 크게 漁業所得에 依存하고 있는 경우(②-1)와 그 반대로 실질상 漁業所得 보다는 漁業이외의 所得의 비중이 높은 경우(②-2)의 두가지로 크게 區分할 수 있다.

③의 경우는 ②-2의 경우에 있어서 漁業이외의 所得이 增大하여 결국 漁業所得을 무시 혹은 포기하게 되거나 또는 어떠한 이유에서 漁業을 상실하게 될 때 (① 또는 ②)에 나타나는 유형이다. 따라서 ③의 형태는 엄격하게는 漁家の 概念에서 除外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사실상은 漁家라고 할 수 없는 것이나 漁業상실이후의 유형으로 볼때 완전 漁業포기자와 回復까지의 일시적 상실자로 區別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완전 漁業포기자이외는 결국 漁業者로의 복귀를 期待하고 있는 者이기 때문에 漁家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원천별 漁家所得面에서 零細水産業과 水産企業의 區別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문제이다. 곧 漁家所得이 漁業所得과 漁業이외의 所得으로 구성되고 있다는 것은 明確하나 零細水産業과 水産企業의 區別은 결국 漁業所得의 원천적 유무나 그 규모에서 구분하기는 곤란하므로 兩者를 統合한 總額에서 決定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의 基準設定도 流動的이며 간단히 說明하기란 대단히 곤란한 問題가 아닐 수 없다.

그럼 여기에서 角度를 달리하여 이러한 漁家所得의 收入과 支出이라는 經濟循環面에서 考察하여 보기로 하자.<sup>45)</sup>

漁家란 漁業을 營爲하는 것을 基本으로 한다는 점에서 먼저 漁家經濟를,

$$\text{漁業所得} - \text{家計費} = \text{剩餘(利益)} \tag{1}$$

로 表示할 수 있다.

이 식은 事業(經營)과 家計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再展開할 수 있다.

$$\text{漁業收益} - \text{漁業費用} = \text{漁業利益} - \text{家計費} = \begin{cases} \text{赤字(-)} \\ \text{均衡(=)} \\ \text{黑字(+)} \end{cases} \tag{2}$$

위의(2)式에서 볼 때 “漁業收益-漁業費用”의 경우, 반드시 利益만이 발생한다고도 볼 수 없으며 또한 여기에 漁業이외의 所得도 고려할 수 있으나 계속 經營으로서 漁業이 持續되기 위하여는 일단 여기에서는 漁業利益이 發生한다고 가정하는 것이 좋다.

다음에 그 “漁業利益-家計費”의 경우는 漁業利益이 家計費의 充當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생

45) 張毅鎬著, 水産經營學, 親學社, 1966, pp. 20~25.

각할 때 여기에는 赤字(-), 均衡(=), 黒字(+)<sup>1)</sup>의 세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먼저 赤字의 경우는 그의 補充을 위하여 漁業이외의 收入이 있으면 그것으로서 充當할 수 있으나, 그것마저 不足하거나 없을 때는 負債를 감수하여야 한다. 이러한 과정이 反覆된다면 그것은 經濟學에서 말하는 縮小再生産의 過程을 밟아야 하고 이 경우는 어느 시기에 가서는 前述한 바와 같이 漁業상실을 가져 오게 될 것이다.

均衡(=)의 경우는 漁業利益으로서 家計費의 充當은 되나 그 이상의 여유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漁業이외의 收入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 漁業은 現狀維持가 겨우 可能할 뿐 剩餘가 전혀 없으므로 蓄積을 생각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경우는 經濟學에서 말하는 單純再生産의 過程을 밟게 된다. 만약 漁業이외의 收入이 있다면 그것이 蓄積源이 되어 擴大再生産을 가능케 할 것이다.

그리고 黒字(+)<sup>2)</sup>의 경우는 漁業收入으로서 家計費를 充當하고도 剩餘가 발생하므로 家族의 生計는 물론 漁業이외의 所得이 없는 경우라도 蓄積이 되며 擴大再生産이 가능하다. 그리고 그 擴大再生産의 程度는 그 剩餘金의 程度에 따라 그의 規模나 生成의 速度에 차이가 나타 날 것이다. 따라서 그 剩餘의 規模가 어느 水準이상이 되면 漁業者의 漁業經營利益도 家計主義(生計主義)를 벗어나 投下資本의 增殖을 目標로 하는 傳統的인 營利主義原則에 입각하여 漁業을 營爲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 段階의 漁業이란 최소한 상시 5인 이상의 漁業經營規模에서만 추구 가능하다고 생각 된다. 곧 生計主義原則을 벗어나는 漁業이면 최소한 家計와 經營이 分離될 수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점에서 零細水産業과 中小水産業(또는 水産企業)을 區分하는 基準은 최저 中小企業基本法에 의한 상시 5인 기준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일단은 妥當성이 認定될 수 있으며 現實에 있어서도 合理性을 가진다고 사료된다.

## VII. 結 論

지금까지 水産經營學의 研究對象으로서의 水産業의 概念과약을 위하여 여러 角度에서 고찰하여 왔다. 要約하면 우리나라에 있어서 水産業이란 用語가 언제부터 사용되고 研究되어 왔는가 하는 점 현재 學界에서 사용하고 있는 水産業의 多様な 概念과 그의 흐름 그리고 그중에서도 社會科學으로서의 水産經營學의 研究對象에 있어 그 概念에 대한 檢討 水産業의 産業概念으로서의 成立條件 및 筆者의 所論展開를 하여왔다.

所論展開에 있어서는 産業概念으로서의 水産業을 經營學的 立場에서 規定하며 그의 本質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水産經營學의 研究對象으로서의 水産業의 範圍결정을 위한 水産業의 規模區分을 零細水産業과 水産企業으로 兩分하여 보았다. 이와 같이 水産業의 規模를 兩分할 때는 水産經營學의 研究對象으로서의 水産業이란 ① 이 兩者를 다 包含할 것인가 ② 혹은 零細水産業을 제외한 水産企業만을 對象으로 할 것인가 ③ 또는 水産企業중에서도 그것을 더욱 細分하여 그중 어느 수준 이상의 규모만을 對象으로 할 것인가에 대하여 決定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本論에서도 고찰한 바와 같이 水産業이란 그 事業規模의 大小에 관계없이 生産物을 販賣할 것을 目的으로 하는 資本主義 市場經濟의 메카니즘에 依存하여 成立하고 있는 産業이기 때문에 이러한 水産業全般을 研究對象으

### 水産經營學의 本質에 관한 考察

로 하느냐 또는 어느 特定規模 이상만을 對象으로 하느냐 하는 것이 問題가 된다. 여기에서 論者は 零細水産業을 제외한 水産企業全般을 對象으로 하는 것이 妥當하다고 생각된다. 그 이유는 이미 本論에서 檢討하였기 때문에 여기에서 詳述하지는 않겠으나 요컨대 特殊經營學(水産經營學)의 研究對象으로서의 産業이란 최소한 經營이 家計와 分離될 수 있는 規模라야 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곧 家計와 經營이 分離될 수 있을 때 비로소 事業의 經濟(經營經濟)로서 特性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社會經濟를 구성하는 經濟單位는 무수히 存在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家庭經濟(家計)와 國家 또는 公共團體의 經濟인 財政과도 區別될 수 있는 經營經濟라야 하기 때문이다. 換言하면 家計가 支配하는 經濟構成體에서는 近代의 企業의 經營原理가 適用될 수 없으며 따라서 그의 社會秩序維持를 위한 規範으로서의 商法이나 中小企業基本法등 法律規定的 適用에서도 제외되어 있는 零細企業體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事業體는 企業이라기 보다는 生業이라는 觀點에서 家族集團의 生命維持와 그의 存立에 관한 研究가 中心이 되어야 한다. 때문에 만일 이러한 異質的인 兩集團을 混合하여 研究한다면 相互矛盾된 理論展開로서 統一法則이나 原理의 成立 또는 異質的要素의 消化가 事實상 不可能하게 될 것이라 생각된다.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水産經營學의 研究對象으로서의 水産業이란 生計主義原則에 支配되고 있는 零細水産業을 除外한 資本增殖을 目的으로 하는 營利主義 企業이나 非營利水産業의 범주에 속하는 公共企業이나 水協등의 協同組合企業으로서의 水産企業에 限定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